

# 2025 소공연장 지원사업 공모 공고
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민간 소공연장 지원을 통해  
도내 소공연장의 창작기반 구축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 
‘2025 소공연장 지원사업’공모를 시행합니다.  
도내 민간 소공연장 운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. 4. 17.
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## 1 공모개요

- 사업명 : 2025 소공연장 지원사업 \* 전)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1 ~ 12월
- 총지원액 : 240백만원
- 지원규모 : 5개소 내외 \* 단체별 최소 30백만원 ~ 최대 50백만원
- 지원대상 : 도내 민간 소공연장 운영 단체
  - \* 소공연장: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등록 완료한 객석 수 300석 미만의 공연장
- 지원장르 : 연극, 음악, 무용, 전통
- 지원내용 : 소공연장의 기획공연 제작 및 발표, 시설 보수 등
- 공고기간 : 2025. 4. 17.(목) ~ 5. 2.(금) / 16일간
- 접수기간 : 2025. 4. 25.(금) ~ 5. 2.(금) / 8일간
-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) 지원신청

## 2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

구 분	2024년	2025년
가 산 점	지역소멸 대응	◦ 군 단위 (8개) 소재(2.5점) -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
	장애 예술인 참여	◦ 장애예술인 1명 이상 참여 (5점) -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수
	순수 창작물	◦ 해당사항없음 ◦ 신청주체의 순수창작물 (1작품당 1점, 최대 2점)
미정산 제재 강화	◦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산 완료 전까지 보조금 교부 불가	◦ (~'23년도)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◦ ('24년도)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내에 정산 미완료시 선정 취소

## 3 사업 세부 지원계획

### ① 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 : 2025. 4 ~ 12월

○ 지원대상 : 도내 민간 소공연장 운영 단체

\* 소공연장: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등록 완료한 객석 수 300석 미만의 공연장

○ 운영요건 : 창작 작품 2개 이상을 장르에 따라 \*10일 또는 15일 이상 공연

\* 연극 주력 단체 15일, 그 외 장르 주력 단체 10일

○ 지원장르 :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

○ 지원내용 : 소공연장의 자체 기획공연 제작 및 발표, 시설 보수 등

○ 지원항목 : 소공연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구 분	내 용	예산 비율
작품제작비	◦ 공연제작비, 홍보비, 사례비(출연진, staff 등)	50% 이상
운영비	◦ 기획전담인력 인건비, 공과금, 회계검사수수료	30% 이내
시설보수비	◦ 비상대피로, 화재예방시설 등	20% 이내

○ 지원요건 : 창작 작품 2개 이상을 장르에 따라 10일 또는 15일 이상 공연

구분	주요내용	
작품 수	◦ 2개 이상 공연	
공연 일 수	연극 주력 단체(사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15일 이상</b></li> <li>◦ 전체 공연일의 합이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함 (준비 및 셋업기간 제외) 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3개 연극 제작, 공연별 5일 진행 → 15일(가능)</li> <li>② 5개 연극 제작, 공연별 3일 진행 → 15일(가능)</li> <li>③ 4개 연극 제작, 공연별 3일 진행 → 12일(불가)</li> </ul> </li> </ul>
	그 외 장르 주력 단체(사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10일 이상</b></li> <li>◦ 전체 공연일의 합이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함 (준비 및 셋업기간 제외) 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10개 공연 기획, 공연별 1일 진행 → 10일(가능)</li> <li>② 5개 공연 기획, 공연별 2일 진행 → 10일(가능)</li> <li>③ 9개 공연 기획, 공연별 1일 진행 → 9일(불가)</li> </ul> </li> </ul>
사업형태	◦ 신청 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실연	
안전관리	◦ 공연장별 안전관리 계획 및 재해대처 계획 수립	

## ②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

-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전용카드)이 불가능하거나 단체의 경상비, 시설건립·재건축, 기금적립, 자산취득형 경비는 지원 불가
- 단체 대표자가 본 사업 수행에서 본인의 역할(연출, 기획, 작가 등)이 명확한 경우, 총 지원금의 5% 이내로 사례비 책정 가능
-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증제도 운영(회계검증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가능) – 추후 지정 회계법인 안내
-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활동(연출, 배우, 안무, 기술지원 등)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보험료 산정 방법

일반예술인(계약기간 1개월 이상)	단기예술인(계약기간 1개월 미만)
보험료 = *월평균 보수 × *보험료율	보험료 = 소득 × 0.75 × 보험료율

\* 월평균 보수 = 월평균 소득 × 0.75 / 단, 80만원 미만일 경우 80만원으로 함.

\* 보험료율은 1.6%이며,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.8%씩 부담(사업주 부담금은 지원금으로 편성 가능하며, 예술인 부담금은 사례비에서 공제하여야 함)

※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내 보험료계산기 활용(<http://kawf.kr/emplns/emplnsShortCal.do>)

## ○ 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

구분	세부내용
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례비(출연, 기획, 연출 등)</li> <li>◦ 인건비(기획전담인력)</li> <li>◦ 홍보 및 마케팅(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)</li> <li>◦ 제작비(영상, 음악, 무대, 소품, 의상, 분장 등)</li> <li>◦ 재료비(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)</li> <li>◦ 발간비(작품집 등)</li> <li>◦ 용역비(시설보수비)</li> <li>◦ 수수료(회계검증수수료)</li> <li>◦ 원천세</li> </ul>
공공요금 및 제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공요금 및 제세(공과금, 우편료 등)</li> </ul>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임차료(장비, 소품 대여비 등)</li> </ul>
복리후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복리후생비(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)</li> </ul>

## ○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

사용불가 항목	용도
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</li> <li>◦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</li> <li>◦ 회의비(식비, 다과비), 주류(사용 시 환수조치)</li> <li>◦ 상금, 상금 심사비 등</li> </ul>
자산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종료 후에도 기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노트북, 모니터, 프로젝터, 그래픽카드, 음향 장비 등 ※ 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</li> <li>- 공연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</li> </ul> </li> <li>◦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※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예) 공연의상, 직접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</li> </ul>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보조금 수령자(단체대표자)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</li> <li>◦ 업무추진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</li> <li>◦ 수수료 불가(문자서비스, 공동인증서 발급, 이체 수수료 등)</li> <li>◦ 세금/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, 과태료</li> <li>◦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</li> </ul>
부가가치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가 과세 사업자일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 가치세 사용 불가</li> </ul>

## 4 지원기준

### ○ 연속 지원 제한

- 2023년도를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연속 선정자는 이듬해에 신청불가  
※ 예시) 2022~2024년 연속 선정된 개인·단체는 2025년에 신청 불가

### ○ 단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제한

- '사업자등록증' 또는 '고유번호증' 중 최소 1종 필수 제출

### ○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활동 우대

### ○ 모든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수하며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과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및 재단 회계정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

### ○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 중 부정청탁 금지

- 부정청탁 확인 시 심의에서 제외되고 청탁한 개인·단체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불가

### ○ 지원사업 지원 기준 공통사항

#### ① 지원총량제

- 수행 기간 기준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동일 단체에 대하여 재단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지원 금액이 총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한

#### ② 지원신청 불가능한 단체

##### ◦ (단체)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
- 국·공립(도·시·군·구)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문화원, 문화의 집, 민간위탁문화시설
- 학교, 학원, 교습소, 종교단체,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
- 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 재·휴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
- 동호회, 동아리로서 구성 및 운영되는 단체
- 주된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단체

##### ◦ (사업포기)

- 2022년 ~ 2024년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개인 및 단체  
※ 단,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여 사업포기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

##### ◦ (불공정 행위)
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
-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 및 제35조(재정지원의 중단 등)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
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 및 단체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

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(형실험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
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공공재정 환수법)」 및 「보조금 운용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·단체
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임금(사례비)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

◦ (성희롱·성폭력)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험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
-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
  - ※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·성폭력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개인 및 단체는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
  - ※ 사업 기간 중에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

◦ (지식재산권)

- 지식재산권(저작권 등) 침해 등의 사유로 법적 분쟁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은 개인 및 단체

◦ (미정산)

-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(단, 정산 처리 기한 중에 있는 2024년 지원사업 선정자는 예외로 하나, 교부시까지 정산 처리 완료하여야 함, 미완료시 선정 취소 진행)

### ③ 지원신청 불가한 사업

-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비,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
- 단체(개인) 신청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개인(단체)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업
-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
- 현직 교사·교수의 학술지 발표, 연구 활동 등으로 지원받는 사업
- 학위청구 또는 기관(조직) 내 연구 활동 실적 제출을 위한 사업
- 타 기관 및 조직의 주최(기획)사업에 참여하는 사업
- 지원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(직접 운영 원칙 위배)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
- 초·중·고·예비 예술인(대학생 포함) 50% 이상이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
- 타인의 명의나 작품을 도용하여 신청한 사업
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등

### ④ 사업 다중 신청 및 선정 제한

- 다수 사업 선정 불가
-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\*을 구성하는 8개 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내 동일 단체가 1개 사업 이상 신청은 가능하나 다수 사업 선정 시 택 1 하여야 함
  - ※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,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,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, 소공연장지원사업,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,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, 아트전북페스타,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

## ⑤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

- 지원신청 시 예술인(단체)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(단체)의 지원신청 내용을 신뢰하고, 이를 기반으로 심의 진행
- 부정확한 정보의 기재, 제출된 자료의 오류, 신청자의 신청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 ⑥ 지원신청 및 심의 과정 중 부정 청탁 금지

- 부정 청탁 확인 시 심의에서 제외되고 청탁한 개인·단체 향후 3년간 해당 사업지원 불가

## ⑦ 기타사항

-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혜택 없음
- 모든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수하며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과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및 재단 회계정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
- 선정 이후 모든 활동은 관계 법령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, 집행, 정산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으로 진행됨
-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(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, 지원신청서, 청렴이행서약서, 성희롱·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) 내용 확인 및 동의 필수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불가
- 사업 선정 이후 주요 사업내용(지출계획 포함)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
-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(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기간 이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제한)
- 선정자 워크숍, 정산교육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서 안내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- 지원사업 수행 시 제3자로부터 예술 활동을 노무로서 제공받는 경우,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(계약서 작성 필수)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
※ 예술인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보조금 편성 가능
-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·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이후 사업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함
- 선정된 단체 사업 운영 프로그램(기획전시 콘텐츠 등)은 재단 내 문화예술·관광사업과 연계 협력할 시 활용될 수 있음

## 5 | 지원신청 · 접수

### ○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◦ 2025. 4. 17.(목) ~ 5. 2.(금) / 16일 간
접수 기간	◦ 2025. 4. 25.(금) ~ 5. 2.(금) 17:59 마감 / 8일 간
신청 방법	◦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 <a href="https://www.ncas.or.kr">https://www.ncas.or.kr</a> )
제출 서류	<p>① <u>지원신청서(붙임2. 서식에 따라 작성)</u> →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※ 지원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내 [첨부파일]탭에 첨부</p> <p>② <u>발표자료(PPT)</u> : 글자제, 형식 등의 왜곡 방지를 위해 <u>PDF 형태로 변환하여</u> 5. 13. (화) 13:00 까지 <a href="mailto:hansu@jbct.or.kr">hansu@jbct.or.kr</a>로 송부하여야 하며, 이메일 제목은 '소공연장 지원사업 발표자료_단체명'으로 하여야 함 ※ 발표시간: 15분 이내 ※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감점 ※ 지원신청서(한글파일)는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해당 파일 내에 모두 작성(첨부)하게 되어 있음 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</p>
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, 재단 직원의 시스템 지원신청 대행 불가</li><li>◦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 가능. 단, 접수 마감일에는 17:59에 시스템 접수 마감</li><li>-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단체명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지원신청</li><li>- 지원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, <u>가급적 2~3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.</u></li><li>- 신청서 최종 제출 후 신청 기간 마감 전까지는 신청서 회수 및 재작성이 가능합니다. 단, 마감 시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.</li></ul></li>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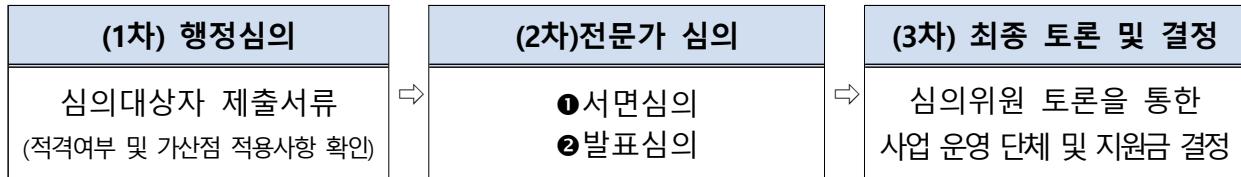
## 6 지원심의

### ○ 심의방식 : 서류 및 발표심의

### ○ 심의위원 구성

- 문화예술 전문기관 추천 및 공개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된 심의위원 인력 풀에서 후보군 3배수 구성 후 추첨을 통해 최종 심의위원회 구성(총 5명)

### ○ 심의 과정



### ○ 심의일정

구분	일정(예정)	내용
행정 심의	◦ 2025. 5. 7.(수) ~ 5. 9.(금)	◦ 결격사유 및 가산점 적용사항 확인
전문가 심의 안내	◦ 2025. 5. 12.(월)	◦ 재단 홈페이지 – 공지사항 게재
전문가 심의	◦ 2025. 5. 15.(목)	◦ 서면심의 및 발표심의 진행
결과 발표	◦ 2025. 5. 19.(월)	◦ 재단 홈페이지 – 사업공고 게재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○ 행정심의 내용

구분	검토내용	반영사항
결격사유 확인	1)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	심의배제 (결격처리)
	2)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	
	3) 지원신청서를 통한 분야별 자격요건 증빙 불가(또는 증빙된 자격의 미달)	
	4)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(지정양식 미사용 등)	
	5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신청 사업 오 선택	
가산점 적용사항 확인	6) 지역 가산점(2.5점):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지역(10개*) *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	최대 합계 5점까지 인정
	7) 신규(최초 지원) 가산점(2.5점) ※ 2020~2024년 동안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및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단체 대상	
	8)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(5점) ※ 장애인 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 중 30%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가산점을 득함	

## ○ 전문가 심의 기준

심의기준	배점(점)	세부평가내용						
합 계	100+5							
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계획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가?</li> <li>◦ 기획공연의 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?</li> <li>◦ 계획 대비 예산 규모는 적정한가?</li> <li>◦ 예산 편성 내역은 구체적인가?</li> </ul>						
사업장소의 적정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공연장의 시설 등이 사업운영 장소로 적정한가?</li> <li>◦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한가?</li> </ul>						
신청자(단체)의 실행역량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?</li> <li>◦ 사업실적 및 경력이 우수한가?</li> <li>◦ 조직 및 인력구성이 적정한가?</li> </ul>						
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도내 공연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?</li> <li>◦ 영향력 있는 소공연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?</li> <li>◦ 도민 문화 향유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?</li> </ul>						
(가점) ESG실천*	3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환경(Environment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품 재활용, 친환경 홍보물, 자재 사용 등</li> <li>-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소재를 다룬 공연 내용</li> <li>- 공연장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등 친환경 캠페인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회(Soci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취약계층(장애인, 고령자 등) 배려 운영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사회취약계층 대상 관람권 할인, 장애인 관람석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거버넌스(Governance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소통)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홈페이지, sns 등에 지속적인 공연 정보 업데이트</li> </ul> </li> <li>- (비전) 소공연장의 자생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/계획 설정</li> <li>- (협력) 타 공연장·문화시설·기관 등과 협력 구조 마련</li> <li>- (권리보호)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 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노력/의지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/table>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환경(Environment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품 재활용, 친환경 홍보물, 자재 사용 등</li> <li>-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소재를 다룬 공연 내용</li> <li>- 공연장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등 친환경 캠페인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회(Soci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취약계층(장애인, 고령자 등) 배려 운영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사회취약계층 대상 관람권 할인, 장애인 관람석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거버넌스(Governance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소통)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홈페이지, sns 등에 지속적인 공연 정보 업데이트</li> </ul> </li> <li>- (비전) 소공연장의 자생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/계획 설정</li> <li>- (협력) 타 공연장·문화시설·기관 등과 협력 구조 마련</li> <li>- (권리보호)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 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노력/의지</li> </ul> </li> </ul>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환경(Environment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품 재활용, 친환경 홍보물, 자재 사용 등</li> <li>-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소재를 다룬 공연 내용</li> <li>- 공연장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등 친환경 캠페인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회(Social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취약계층(장애인, 고령자 등) 배려 운영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사회취약계층 대상 관람권 할인, 장애인 관람석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거버넌스(Governance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소통)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x) 홈페이지, sns 등에 지속적인 공연 정보 업데이트</li> </ul> </li> <li>- (비전) 소공연장의 자생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/계획 설정</li> <li>- (협력) 타 공연장·문화시설·기관 등과 협력 구조 마련</li> <li>- (권리보호)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 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노력/의지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(가점) 순수창작물	2 *작품당 1점, 최대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신청단체가 공연의 기획 및 창작 전반을 직접 수행하였는가?</li> <li>◦ 기존 작품을 단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창작 콘텐츠로 구성되었는가?</li> <li>◦ 대본, 음악, 연출 등 공연 구성 요소에 신청 주체의 창작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?</li> <li>◦ 창작 의도, 창작 과정, 작품의 독창성이 신청서나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가?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⇒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'순수 창작물'로 판단할 수 있는가?</b></p>						

\*(ESG 실천) 환경·사회·거버넌스 각 항목별 1점 씩 배점

## ○ 전문가 심의(PT 발표) 진행 방법

- 사업 신청접수 무작위 추첨 순 발표 진행(단체별 총 30분 이내 진행)
- 프리젠테이션(PT)을 이용한 발표(15분) + 질의응답(15분)
  - \* 접수 건이 많을 경우 발표 시간 조정 가능
- 단체별 대표자 또는 사업 수행 담당자 2명 이내 필수 참석

## 7

## 추진일정

구분	일정(예정)	내용
공고기간	◦ 2025. 4. 17.(목) ~ 5. 2.(금)	◦ 재단 홈페이지 - 사업공고 게재
접수기간	◦ 2024. 4. 25.(금) ~ 5. 2.(금) 17:59분 마감	◦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) 온라인 접수
발표심의 안내	◦ 2025. 5. 12.(월)	◦ 재단 홈페이지 – [공지사항] 내 게시
발표심의	◦ 2025. 5. 15.(목)	◦ PPT를 사용하여 15분 이내 발표 및 15분 이내 질의응답
결과발표	◦ 2025. 5. 19.(월) 예정	◦ 재단 홈페이지 – [사업공고] 내 게시
선정단체 간담회	◦ 2025. 5월 중	◦ 사업 운영 및 교부신청 등 안내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8

## 문의

구분	연락처	비고
사업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	063-230-7444	평일 10:00~11:30 14:00~17:00
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관련 (회원가입, 지원신청 등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	1577-8751	

※ 공모 및 접수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(근로자의 날 포함)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 
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24 소공연장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.  
2. 2024 소공연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 
3.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사용방법(회원가입, 지원신청) 1부. 끝.